
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5. 9.

제안자 : 여성가족위원장

수정이유

「노인복지법」 등 유사 입법례 마련 과정에서 권고사항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언론보도기준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것은 방송과 언론의 자유와 독립 및 공정성 등을 침해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하고 있는 심의·제재와 중복되는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사례를 참고하여 보도 권고기준 및 그 이행 방안을 방송·신문·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의 주무부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도록 함.

수정주요내용

여성가족부장관이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는 문구를 추가함.
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8조의2제1항 중 “위하여”를 “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
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u><신설></u>	<u>제18조의2(여성폭력사건 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)</u>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사건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·신문·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여성폭력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략)	제18조의2(여성폭력사건 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·③ (개정안과 같음)
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12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19.

발 의 자 : 이인선 · 강선영 · 강대식
임이자 · 김장겸 · 김정재
고동진 · 최은석 · 박상웅
조은희 · 서범수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언론이 여성폭력사건보도를 할 경우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. 그 결과,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.

이에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2 신설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여성가족부장관이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는 문구를 추가함.
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8조의2(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송·신문·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언론은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8조의2(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)</u> <u>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송·신문·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u> <u>③ 언론은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